

#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동현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789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7월 29일

발 의 자 : 강대호, 김경우, 김경영, 김태호, 김호평,  
박기재, 안광석, 이동현, 전병주, 최 선,  
한기영 의원 (11명)

## 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2조3호에는 청소년 활동시설의 정의를 “청소년수련활동”, “청소년교류활동”, “청소년 문화활동”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음.
- 그러나 “청소년교류활동”은 제2조4호에 정의 되어 있으나 “청소년수련활동”, “청소년문화활동”은 정의되어 있지않아 법적 해석의 논란이 있음.
-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거 해당 청소년활동에 정의를 명확히 하여 법 해석의 논란과 이에 따른 문제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있음.

## 2. 주요골자

-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2조5호, 제2조6호를 각각 신설하여 “청소년수련활동”, “청소년문화활동”의 정의를 신설함.
- 상위법인 ‘청소년활동 진흥법’에 따라 법적 체계를 갖추.
- 기존의 제2조제5호는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신설함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「청소년 활동진흥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“청소년수련활동”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체험활동을 말한다.
6. “청소년문화활동”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체험활동을 말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2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4. (생   략)</p> <p><u>&lt;신   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  설&gt;</u></p> <p>5. (생   략)</p>	<p>제2조 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“청소년수련활동”이란 법 제 2조제3호에 따른 체험활동을 말한다.</u></p> <p>6. <u>“청소년문화활동”이란 법 제 2조제5호에 따른 체험활동을 말한다.</u></p> <p>7. (현행 제5호와 같음)</p>